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정원 1명(5급 1명)은 증원하되, 정원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상융합산업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지역과학관 개관·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집적정보통신시설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한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의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호부터 제81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8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1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 시행

제36조제2항 후단 중 “71명”을 “70명”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788”을 “791”로 하고, 일반직 계 “779”를 “7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0”을 “75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021”을 “1,0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21”을 “1,02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19”를 “1,021”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4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9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정보통신정책실 1개 정책관등	1명
2. 정보통신정책실 1개 과	1명
3. 네트워크정책실	1명
4. 네트워크정책실 1개 과	1명
5. 성과평가정책국 1개 과	5명
6. 연구개발정책실 1개 과	2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16. (생 략) <u><신 설></u> <u><신 설></u> 17. ~ 81. (생 략)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6. (현행과 같음) <u>1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u> <u>육성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운</u> <u>영 · 발전</u> <u>1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u> <u>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시행계</u> <u>획 수립 · 시행</u> 19. ~ 83. (현행 제17호부터 제 81호까지와 같음)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 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 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다)은 <u>71명</u> 을, 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 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70명</u> ----- ----- -----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41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③ (생략)

④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한시정원)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88</u>	<u>791</u>	+3
·	·	·	
·	·	·	
일반직 계	<u>779</u>	<u>782</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50</u>	<u>753</u>	+3
·	·	·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21</u>	<u>1,023</u>	+2
일반직 계	<u>1,021</u>	<u>1,023</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19</u>	<u>1,021</u>	+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9